

자연재난 피해신고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제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1. 피해자 정보

주소(사업장)					
주거 형태	소유자(실거주) [], 소유자(미거주) [], 세입자 [], 공공임대 세입자 []				
성명(대표자)	(주민등록번호: -)				
가족 수	명(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)				
고등학생 수	()고등학교 명 ()고등학교 명				
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	은행명:	계좌번호:		예금주:	
연 락 처	이동전화	- -	통신사명	[]KT []SKT []LGU+ []기타	가입자 정보 성명: 생년월일:
	유선전화	() -			가입자 정보 성명: 생년월일:

2. 피해 내용

※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피해 발생 위치						
피해시설명		①	②	③	④	⑤
총면적(소유 + 임차)		①	②	③	④	⑤
면허·허가·등록 번호		①	②	③	④	⑤
피해물량	신고	①	②	③	④	⑤
	확정	①	②	③	④	⑤
피해 구분		①	②	③	④	⑤
피해 원인		①	②	③	④	⑤
간 접 지 원	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[]
	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	[]	[]	[]	[]	[]
피해 발생 위치						
피해시설명		⑥	⑦	⑧	⑨	⑩
총면적(소유 + 임차)		⑥	⑦	⑧	⑨	⑩
면허·허가·등록 번호		⑥	⑦	⑧	⑨	⑩
피해물량	신고	⑥	⑦	⑧	⑨	⑩
	확정	⑥	⑦	⑧	⑨	⑩
피해 구분		⑥	⑦	⑧	⑨	⑩
피해 원인		⑥	⑦	⑧	⑨	⑩
간 접 지 원	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[]
	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	[]	[]	[]	[]	[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,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-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으면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-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재해구호법」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및 제출 방법

1. []에는 해당 사항에 √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2.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, '1. 피해자 정보' 를 정확히 적습니다.
3.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·침수·소파·반파·전파·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
4.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.
5.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√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「풍수해보험법」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.
6.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청,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